

정 관

재단법인 사조희망나눔재단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사조희망나눔재단”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법인은 나눔문화를 활성화시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가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나눔실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5층 (충정로2가) 401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전국 각 시, 군, 구에 분사무소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나눔문화 활성화
2. 공익기금 조성 및 기부활동
3.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4. 청소년 대상 꿈·희망 지원 사업
5.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익사업 지원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조 (무상이익의 원칙)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 6조 (수혜평등의 원칙)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7조 (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8조(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9조 (재원)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10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업무보고)

-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회계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기부금실적의 공개)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13조 (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법인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5인(이사장 포함)
2. 감사 2인

제16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 (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19조 (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소속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1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22조 (이사회회 구성)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 (이사회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기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 (이사회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5조 (이사회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 (이사회 개의회와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이사회 회의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 무 국

제28조 (사무국)

- ① 법인의 전반적인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수익사업

제29조 (수익사업)

-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30조 (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 의결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 6 장 보 칙

제31조 (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별지 1]

기본재산 목록

종 류	수 량	평가금액(원)	비 고
현 금		400,000,000	
토 지	142m ²	13,206,000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985
토 지	238m ²	22,134,000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986
토 지	750m ²	69,750,000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987
토 지	248m ²	22,568,000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988
건 물	149.77m ²	11,242,400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987
합 계		538,900,400	

※ 출연자 : 사조산업 주식회사